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우수 대부업자 지정 제도 도입 등〉

■ 박수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974호)

2025. 2.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명 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등록의 자기자본 요건 강화	3
2. 우수대부업자 지정 제도 도입 등	6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수영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2. 26.
3. 회 부 일 : 2024. 12.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전대부업, 양도담보, 어음할인,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 업종의 상호를 모두 “대부”로 표시하게 함으로써 실제 대부업권의 다양한 업태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등록대부업자 외에는 “대부”라는 상호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사실상 불법사금융업자도 대부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이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로 오해하게 되는 등 불법사금융 이용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한편, 현행법은 대부업자 등이 등록하기 위한 최소 자기자본을 1천만원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자본이 부실한 개인들이 손쉽게 대부업에 뛰어들 수 있어 선의의 금융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

이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로서 저소득층에 대한 신용대출 실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대부업자를 생활금융 우수대부업자로 지정하고, 그 상호에 “생활금융”이라는 문자를 사용하도록 하여 서민금융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한편, 대부업자 등의 등록을 위한 최소 자기자본을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불법·부실 사금융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5, 제3조의6, 제5조의2제1항 단서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등록의 자기자본 요건 강화

□ 개정안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의 등록요건 중 자기자본(순자산액) 요건을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5).

현행	개정안
제3조의5(등록요건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u>1천만원</u>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법인인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을 갖출 것. 다만,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의5(등록요건 등) ① ----- ----- -----. 1. <u>1억원</u> ----- ----- ----- -----.
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생략) 2. <u>1천만원</u>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다만,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 1. (현행과 같음) 2. <u>1억원</u> ----- ----- -----.
3. ~ 7. (생략)	3. ~ 7. (현행과 같음)

□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함)은 대부업자등¹⁾이 등록하려는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을 갖추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 대부업법이 처음 제정된 2002년 당시에는 대부업자등이 등록하기 위한 별도의 자본 요건이 없었으나, 영세 대부업자등의 난립을 방지하고 영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본을 갖추어 대부업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5년 7월 24일 「대부업법」을 개정(2016. 7. 25. 시행)하여 대부업자등²⁾에 대한 자본 요건을 신설하였음.

□ 개정안은 대부업자등(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는 제외)의 자기자본 요건을 1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인데, 최근 대부업자등의 자기자본 요건을 상향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2025. 1. 21. 공포, 2025. 7. 22. 시행 예정)으로 개정안의 내용은 이미 반영된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대부협회 등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한 후 시행령 개정령이 3~4월 중 입법예고, 4~5월 중 규제심사, 5~6월 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법률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되도록 준비할 계획임.

1) 대부업자등 = 대부업자 + 대부중개업자

2) 단,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는 제외

<대부업법상 자기자본 요건 개정 내용>

대상 영업		자기자본(순자산액) 요건	
		기존	개정 ³⁾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등 (§3①)	대부중개업만 하는 경우	(없음)	3천만원 이상으로서 <u>대통령령</u> <u>으로 정하는 금액</u> ※ 시행령(예정) - 3천만원
	그 외	1천만원 이상으로서 <u>대통령령</u> <u>으로 정하는 금액</u> ※ 시행령 - 법인: 5천만원 - 자연인: 1천만원	1억원 이상으로서 <u>대통령령</u> <u>으로 정하는 금액</u> ※ 시행령(예정) - 법인: 3억원 - 자연인: 1억원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등 (§3②)	대부중개업만 하는 경우	(없음)	- 대부중개시스템 활용: 1억 원 이상으로서 <u>대통령령</u> <u>으로 정하는 금액</u> - 그 외: 3천만원 이상으로서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u> ※ 시행령(예정) - 대부중개시스템 활용: 1억원 - 그 외: 3천만원
	그 외	1천만원 이상으로서 <u>대통령령</u> <u>으로 정하는 금액</u> ※ 시행령 - 대부채권매입추심업: 5억원 - 그 외: 3억원	3억원 이상으로서 <u>대통령령</u> <u>으로 정하는 금액</u> ※ 시행령(예정) - 현행과 동일

3) 법률은 2025. 7. 22. 시행 예정사항을, 시행령은 개정 예정사항을 기재

2. 우수대부업자 지정 제도 도입 등

- 개정안은 ①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 중 저소득층 대상 신용대출사업 실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서 신청을 받아 생활금융 우수대부업자(이하 “우수대부업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우수대부업자로 지정된 대부업자는 그 상호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하는 대신 “생활금융”이라는 문자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며, ③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대부업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6 신설, 제5조의2제1항, 제19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신설>	제3조의6(우수대부업자 지정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로서 저소득층의 창업·주거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실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대부업자를 생활금융 우수대부업자(이하 “우수대부업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지정한 우수대부업자의 명단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가 우수대부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

현행	개정안
중 대부업등에서 생기는 영업수익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상호 중에 “대부” 및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이 법에 따른 대부업자등이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⑤ (생략)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략) <신설> 3. ~ 5.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그 상호 중에 <u>대부, 대부중개</u> 또는 이와	----- ----- ----- ----- ---“대부”, “생활금융”----- ----- -----. ④ ----- ----- ----- -못하며, 우수대부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는 그 상호 중에 <u>생활금융</u>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벌칙) ① ----- ----- ----- ---. 1.·2. (현행과 같음) 2의2. <u>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의6에 따른 우수대부업자로 지정된 자</u> 3. ~ 5. (현행과 같음) ② ----- ----- -----. 1. ----- -----<u>대부, 생활금융, 대부거래</u>-----

현행	개정안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자	----- -----
1의2. ~ 10. (생략)	1의2. ~ 10.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1조(과태료) ①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2. ----- -----“대부”, “생활금융”----- -----
3. ~ 12. (생략)	3. ~ 12.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 금융위원회는 2021년 7월 「대부업등 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개정을 통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선정 제도를 도입하였음.

○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될 경우, 개별은행 내규 등에 따라 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이 가능⁴⁾하게 되는 등 자금조달 측면에서 인센티브가 존재하고, 선정 시 금융소비자들에게 준법경영, 사회적 책임 등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해 모객비용 등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음.

4) 일반적으로 은행권에서는 평판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대부업자 대상 차입을 제공하지 않고 있으나, 우수 대부업자 등 공인된 대부업자에 대하여는 사회적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일부 차입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현행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선정 기준 및 절차>

- (선정요건) 1. 저신용자(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개인금융소비자) 대상 개인신용대출
 ① 비중이 70% 이상이거나 ② 잔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2. 최근 3년간 금융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제재처분 전력이 없는 경우
 - (선정절차) 반기별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 → 30일 이내 선정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선정 현황>

대부업체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잔액(억원) / (비율(%))		
	2022년 말	2023년 말	2024년 6월말
○○○	2,168 (66.0)	1,811 (60.2)	1,852 (59.5)
○○○	1,469 (80.1)	1,296 (75.8)	1,295 (72.5)
○○○	1,604 (78.2)	1,127 (64.7)	1,120 (64.6)
○○○	928 (70.5)	827 (66.4)	919 (68.0)
○○○	666 (73.7)	732 (70.3)	763 (71.2)
○○○	1,000 (81.3)	778 (76.9)	760 (72.1)
○○○	640 (32.3)	577 (37.4)	603 (36.2)
○○○	393 (34.3)	380 (37.9)	412 (43.4)
○○○	396 (39.7)	406 (45.0)	393 (44.1)
○○○	-	-	370 (81.2)
○○○	-	-	296 (90.1)
○○○	201 (97.5)	235 (97.3)	270 (93.2)
○○○	181 (11.6)	220 (16.4)	257 (17.8)
○○○	269 (15.9)	279 (17.2)	238 (14.7)
○○○	190 (15.3)	209 (17.1)	195 (17.3)
○○○	113 (6.9)	102 (6.7)	148 (10.1)
○○○	134 (24.4)	85 (13.9)	121 (17.0)
○○○	129 (54.8)	94 (40.7)	99 (34.9)

(자료: 금융위원회, 2024년 6월 기준)

□ 그런데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선정 제도는 법률상 근거 없이 고시에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제도의 영속성 및 인지도 등에 한계가 있는바, 이에 우수 대부업자 선정 제도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먼저, 개정안 제5조의2는 우수대부업자로 지정된 대부업자의 경우 그 상호명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하는 대신에 “생활금융”이라는 문자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해당 대부업자를 일반적인 여신금융기관 등으로 혼동하여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호명 특례 신설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 상호명에서 “대부”라는 문자가 제외될 경우 해당 대부업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효과가 예상되어 우수대부업자로 지정되기 위한 인센티브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여신금융기관에 비해 대출금리가 높고 대출 시 신용평점의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되는 대부업체를 혼동·오인하여 이용할 우려가 있음.

□ 다음으로, 개정안은 현행 금융위원회고시에 근거하여 운영중인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를 법률로 상향하려는 것인데, 법률상

명칭을 “생활금융 우수대부업자”로 정할 경우 금융소비자들이 이를 기 운영중인 제도와 상이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명칭을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로 규정하여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됨.

- 참고로 금융위원회 역시 “생활금융”이라는 명칭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신용을 공급하는 실적이 우수한 대부업자의 업태를 포괄하기에는 불명확한 명칭이고, 기존에 사용해오던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라는 명칭을 일괄적으로 바꿀 경우 소비자들의 혼동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라는 기존 명칭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마지막으로, 개정안은 우수 대부업자의 선정 요건으로 ‘저소득층의 창업·주거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실적 등’에 대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데,

금융위원회는 개정안과 같이 규정할 경우 저소득층이 아닌 자가 저소득층의 창업지원·주택매매 목적에서 받는 대출을 실적으로 인정해주어야 하는 반면, 저소득층이 창업·주거가 아닌 일상생활의 긴급한 수요로 인해 받는 대출에 대하여는 실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우려가 있어 선정 요건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108